

바로보차 거짓평화 파악자 적화아우

72 MAY - 5 11 53

총 무 처

원제 200-832

(70-4345)

1972. 5. 5

수신 수신처참조

제목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령 및 공무원 당직근무규정 공포

1. 공무원 복무규정 중 개정령과 공무원 당직근무규정이 공포되었음을 통지하오니 앞으로 업무처리에 착오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차. 판보 제 6144호 (72. 5. 4 발행)

(1) 공무원 복무규정 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 6161호 72. 5. 4. 공포)

(2) 공무원 당직근무 규정 (총리령 제 109조 72. 5. 4. 공포)

문	접수	서울특별시	전	결	장전결
서	일시	1972 5 6	과	1966	
처	접수	15	과	1966	
리	번호		과	1966	
인			과	19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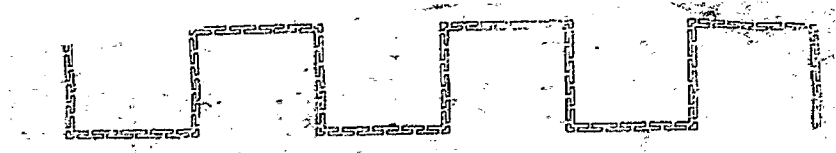
정무공문서 규정 제 27조 인사부장 제 28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원찬 전 결



수신처: 차. 4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	고	고	고	고
관	관	관	관	관
계	계	계	계	계
하	하	하	하	하
내	내	내	내	내
행	행	행	행	행
부	부	부	부	부
총	총	총	총	총
장	장	장	장	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영환



제 6144 호

1972. 5. 4

# 관보

차 례

대통령령..... 3	훈령..... 9
총리령..... 4	고시..... 10

1.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관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3. 비취용 관보는 5년이상 보관한다.

## 대한민국정부

503 A-1-1-4  
1969. 1. 31승인

060

90×268 산문용지 50g/m<sup>2</sup>

**관 보 세 분 목 차**

**대통령령**

○대통령령제 6,16호(공무원복무규정중개정령)..... 3

**총리령**

○총리령제 109호(공무원당직근무규정)..... 4

**훈 령**

○교통신령제 425호(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시행세칙)..... 9

**고 시**

○건설부고시제 161호(공유수면점용및공작물설치기간연장허가)..... 10

○산림청고시제 21호(보안림해제예정지)..... 10

# 대통령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무원복무규정중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정희

1972년 5월 4일

국무총리 김종필  
국무위원 서일교  
총무처장관

## ○대통령령제6, 161호

### 공무원복무규정중개정령

공무원복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5 조 (당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 시간외의 화재·도난 기타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지·숙직·수위 기타의 당직근무자(이하 "당직근무자"라 한다)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전항 이외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 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7 조 (파견근무)** ① 공무원임용령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그 근무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행정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근무기관의 장은 당해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 9조제 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4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말일까지는 9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근무시간은 13시까지로 한다.

제 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5 조 (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연도별 연가일수는 8일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월 이상 6월 미만인 자는 3일, 근무기간이 6월 이상 1년 미만인 자는 7일로 한다.

②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무 연수 1년에 대하여 전항의 연가일수에 1일을 가산한다. 다만, 연

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5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15 조의 2** (근무기간의 계산) 전조의 근무기간에는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지위해제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6 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 15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 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상 제 15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기본봉급액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으로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제 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7 조 (연가일수외의 산입)** ① 사사로 인한 결근일수와 휴직일수·지위해제일수 및 정직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 산입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참 또는 조피 3회는 결근 1일로 계산한다.

제 18조제 1항 본문 중 "2일"을 "연누계 2일"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하며, 동조 제 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병가일이 5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지 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고용원에 대하여 제 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공무로 인한 병가일 경우에는 유급 병가로 하며, 공무원의 사유로 인한 병가일 경우에는 무급병가로 하며, 월 2일(연 누계 24일)은 유급병가로 한다.

제 21조 및 제 23조를 삭제한다.

제 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6 조 (결직허가)** ① 공무원이 전조의 정직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③제 1항에서 "소속기관의 장"이라 함은 3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계정권자, 4급이하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제27조제 1항 중 "법 제65조"를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로 하고, 동조제 2항 중 "법 제65조제 4항에 규정된 정치적행위의 한계는"을 "전항에 규정된 정치적행위의 한계는"으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법 제66조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체신부·전매청 및 철도청 소속의 현업기관과 국립의료원의 작업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한한다.

1. 서무·인사 및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자.
2. 경리 및 물품출납사무에 종사하는 자.
3. 노무자의 감독사무에 종사하는 자.
4.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보안 목표시설의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5. 승용자동차의 운전이 종사하는 자.

별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197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 15조 및 제 28조의 규정은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총리령

공무원당직근무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1972년 5월 4일

국무총리 김 중 필

#### 총리령제109호

공무원당직근무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영은 각급기관의 공무원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당직의 구분) ①당직은 일직과 속직으로 구분한다.

②일직은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속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 3 조 (속직근무자의 휴무) 속직근무자에 대하여는 그 속직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을 휴무일로 하여 휴식을 취하게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의 형편상 그 휴식시간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 4 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당직명령은 당해 기관의 장이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행하여야 한다.

②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조 (당직실 전화번호부) ①당직실에는 전화시설을 하고, 그 전화 번호를 관한 체신판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체신관서의 장은 당직실상호간의 업무연락에 편리하도록 지역별로 당직실전화번호를 발령하여야 한다.

제 6 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전항의 당직신고전에 당직 주무과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용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 이를 당직 주무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속직근무자간에 인계 인수 한다.

제 7 조 (취침금지등) ①당직근무자는 취침하거나 근무구역을 이탈하지 못한다. 다만, 당직명령자는 기관의 규모 및 성격과 그 지역의 치안상태 기타 상황에 따라 교대로 취침을 허용할 수 있다.

②당직근무자는 음주·도박 기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완장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 2 장 기관별당직

제 8 조 (당직의 편성) ①각기관에는 그 기관의 장의 주관하에 소속공무원으로서 당직(이하 "기

관별 '당직'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2 이상의 기관이 동일건물에 위치하는 경우로서 이들 기관의 규모 및 성격상 기관별 당직을 둘 필요가 없을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호 협의하여 당직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상호간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관별 당직근무자는 2 인 이상으로 하되, 책임자 1 인은 감독적 직위에 있는 자이어야 한다. 다만, 감독적 직위의 공무원수가 적을 때에는 바로 하위직공무원을 책임자로 할 수 있다.

제 9 조 (당직의 일반임무) ① 기관별 당직근무자는 상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방호·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점검
2. 경비원 기타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감독
3. 문서의 수발 및 인계
4. 녹기의 제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②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실별로 별지 제 1 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 비치하게 하고, 당직근무자는 최종 퇴장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에 대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중에 접수된 문서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주무과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0 조 (당직의 비상시임무) ① 기관별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와의 연락
2. 청사내의 화재경보
3. 자체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 무장공비 기타 난동자등이 침투하거나 그 침투에 지연할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경찰서와의 연락
2. 무기고동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전 2 항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 및 당직사령(당직사령이 편성된 경우에 한한다)에게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1 조 (당직실의 비품) ① 기관별 당직실에는 다

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 2 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직원 비상소집대장
3. 향토예비군 비상소집대장
4.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5. 비상열쇠·보관함
6. 당직근무규정
7.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전항 제 1 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당해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자 기관의 장은 직원비상소집대장 및 향토예비군 비상소집대장을 수시로 보완하고, 분기별로 적어도 1 회의 소집 연습을 하여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 3 장 당직사령

제 12 조 (중요청사의 당직사령) ①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동일 건물 또는 동일구내에 위치하는 청사에 있어서는 그 청사내의 기관별당직의 근무태도를 지도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그 청사의 관리권을 가지는 기관의 장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의 주관하에 당직사령을 둔다. 다만, 청사의 전반적 관리권을 가지는 기관이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주관청을 정한다.

② 전항의 당직사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청사내에 근무하는 2 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이어야 한다.

제 13 조 (도청소재지등의 당직사령) ① 내부부장관은 도청소재지에 위치하는 자 기관의 당직근무의 유기적인 협조체계의 유지와 당직근무태도의 효율적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도지사(부산시에 있어서는 부산시장)로 하여금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당직사령을 두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기관의 성격 및 위치를 고려하여 기관별 또는 구역별로 따로 당직사령을 두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당직사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할 대상기관의 3 급감류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공무원이어야 한다.

제 14 조 (당직사령보좌관) ① 당직사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보좌관 1 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 전항의 보좌관중 1 인은 당직사령의 바로 하위직의 공무원이어야 한다.

제 15 조 (당직사령의 임무) ① 당직사령은 당해구

역의 기관별당직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순찰 또는 전파에 의한 방법으로 지도·감독한다.

1. 당직편성의 적정여부
2. 당직실비품의 점검확인
3. 당직의 취침여부 기타 근무태도

②제10조의 비상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당직사령은 지체없이 그 상황에 따라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지휘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조정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 (당직사령실의 비품) ①당직사령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 3호서식의 당직사령근무일지
2. 관계기관 당직실의 전화번호부
3. 당직근무규정
4. 기타 기관별 당직의 감독에 필요한 물품

②당직사령근무일지의 서식변경에 관하여는 제 11조제 2항을 준용한다.

제 4 장 당직의감사

제17조 (당직감사) ①각 중앙행정 기관의 장,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 기타 상급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정부 투자기관을 포함한다)

의 당직근무태도를 수시로 감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총무처장관은 제12조에 규정된 정사에 있어서 당직근무태도를 감사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당직총사령을 둘 수 있다.

제18조 (당직태만자의 조치) ①제12조 및 제13조에 의한 당직사령, 전조에 의한 당직감사관 또는 당직총사령이 이 영에 위탁된 당직근무자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소속기관의 장 및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 (시행세칙)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영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각 기관의 장이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폐지규정) 총리훈령 제99호 당직규정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다만, 당직사령 및 당직총사령에 관한 규정은 이 영에 의하여 새로이 당직사령 및 당직총사령을 둘 때 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보 안 점 검 표

[별지 제 1호서식]

실·과명:

197 년 월 일( )요일

구 분	이 상 유 무 확 인		회 종 피 청 자		
	①회종피청자	②당직근무자	③적급	④성명	⑤비청시간
③선 내 소 등 여 부			당 직 근 무 자		
④전 열 기 사 용 여 부			④적급	⑤성명	⑥점검시간
⑤쓰 태 기 봉			비 고		
⑥재 필 이					
⑦소화장비 정비 여부					
⑧캐비닛 개폐 여부					
⑨량문·출입문 개폐 여부					
⑩서무보통상태					

0204-4-1C  
1972. 4. 24 승인

190mm×268mm (표장지 70g/m<sup>2</sup>)

※ 1. 점검사항별로 이상이 있을 때에는 X표, 이상이 없을 때에는 O표를 한다.  
2.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비고란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

[별지 제 2 호 서식]

19 (요일 수:지) 당 직 근 무 일 지					결					
당 직 자	①당 직 명	②소 속	③직 명	④성 명	⑤서명	문 서 처 리 상 황				
						⑥종 류	⑦발 송 문 서 호 수신처	⑧접수 제 목	⑨인계 ⑩비고	
⑭지 지 반은 사 항			⑮조 차 사 항							
⑯지 지 한 사 항			⑰조 치 결 과 화 인			특 근 자 련 황				
⑱보 고 사 항			⑲인 계 사 항	1. 물 품		⑩소 속·실 과			⑪인 원 수	⑫특근시간
				2. 문 서					외 명	
				3. 기 타					외 명	
									외 명	

0204-4-2C  
1972. 4. 24 승인

268mm x 380mm (백상지 70g/m<sup>2</sup>)

청 사 내 의 순 찰 점 검 사 항

①순 찰 시 간	②반견사실 및 처리개요	③순 찰 자	④순 찰 시 간	⑤반견사실 및 처리개요	⑥순 찰 자
시 분부터 시 분까지		①	시 분부터 시 분까지		①
시 분부터 시 분까지		②	시 분부터 시 분까지		②
시 분부터 시 분까지		③	시 분부터 시 분까지		③
시 분부터 시 분까지		④	시 분부터 시 분까지		④
시 분부터 시 분까지		⑤	시 분부터 시 분까지		⑤
⑦연 락 사 항	⑧연락기관	⑨수화자·소속·직명	⑩수화자성명	⑪송화자성명	⑫이 상 유 무
⑬비 고					



[별지 제 3 호서식]

당직 사령 근무일지

19 (요일) (월) (일) (월) (일) (일)					결재			
당직자	①당직사령	②소속	③직급	④성명	⑤ 순 관 감 사 사 항			
	⑤보좌관	⑥소속	⑦직급	⑧성명	⑨순찰 구역	⑩순찰 시간	⑪발견사실 및처리개요	⑫순찰자 성명
⑬지시받은 사항			⑭조치 사항					
⑮지시한 사항			⑯과조치확인					
⑰보고 사항			⑱특기 사항					

0204-4-3C  
1972. 4. 24 승인

268mm x 380mm  
(백상지 70g/m<sup>2</sup>)

기관별 당직 사항 기록

기관명	당직사령	소속	직급	성명	중요 보고 사항		순찰 현황	당직사령인
					보고시간	보고내용		
의령	시	관	시	관			관	관
의령	시	관	시	관			관	관
의령	시	관	시	관			관	관
의령	시	관	시	관			관	관
의령	시	관	시	관			관	관
의령	시	관	시	관			관	관
의령	시	관	시	관			관	관
의령	시	관	시	관			관	관

비고


※당직 사령인의 출품 문서 인계  
1. 출품  
2. 문서

# 훈 영

## ○교통부훈령제 425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1972년 5월 1일

교통부장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 1 조 (목적) 이 영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 28조 및 기타법령에서 위임된 교통부장관 소관사항의 업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사전승인) 전항의 위임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다음 자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법령으로 규정되었거나 또는 교통부장관의 행정지시로서 시달된 처리지침의 범위밖의 사례로서 적용될 기준이 없는 경우
2. 법령으로 규정되었거나 또는 교통부장관의 행정지시로서 시달된 처리지침의 적용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3. 특수한 사유로 행정지시로서 시달된 기준에 반하는 예외적인 처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경우

제 3 조 (보고) 규정 제 4 조의 분기별 종합보고의 예 별도규정이 있거나 행정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고절차에 따르며 별도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즉시 개별적인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조 (내부위임의 승인)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별도승인없이 그 소속직원에게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항을 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전결은 정부공문서규정 제 27 조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 5 조 (채위임의 승인) ① 서울특별시,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위임받은 사항중 다음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구청장, 시장, 군수 또는 기타 소속기관의 장에게 채위임할 수 있다.

1. 시내버스 및 시내합승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항중
  - 가. 운송개시전 시설확인

(자동차운송사업법 제 7 조 제 1 항)

- 나. 운행계통의 변경 (자동차운송사업법 제 13 조)
  - 다. 운행시간인가 (자동차운송사업법 제 13 조)
  - 라. 운송부대시설의 위치변경 (자동차운송사업법 제 13 조)
  - 마. 수송시설(차량제외)개선명령 (자동차운송사업법 제 25 조)
  - 바. 운송사업의 일부휴지 (자동차운송사업법 제 29 조)
2.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중
    - 가. 운송개시전 시설확인 (자동차운송사업법 제 7 조 제 1 항)
      - 나. 상주대수의 인가 (자동차운송사업법 제 13 조)
  3. 사고보고처리(단, 경미한 사고에 한함) (자동차운송사업법 제 17 조)
  4. 운전사취업관리 지도감독 (자동차운송사업법 제 23 조)
  5. 구역업종에 대하여 운송의 인수 거절 또는 운송사업의 전전한 발달을 저해하는 경향을 할 때 공공복리확보를 위한 조치명령
  6. 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인허가 조건 및 시외버스정류장 운행질서 지도 감독 (자동차운송사업법 제 24 조 및 자동차정류장법 제 16 조)
  7. 자동차운송사업 제 31 조에 관한 칙령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중 서울특별시,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행정처분(운송사업체의 면허취소 및 사업정지제외) (자동차운송사업법 제 31 조)
  8. 사업개선(관광호텔업, 국제여행업, 관광작도업 제외) 명령(관광사업진흥법 제 10 조 중 3 호에 의한 명령에 한함)
  9. 사업(관광호텔업, 국제여행업, 관광작도업제외)의 휴지 폐지신고(관광사업진흥법 제 12 조)
  10. 제 2 종저정항만 및 지방항만에 관한 다음 사항
    - 가. 시설의 이용, 이용허가(항만법 제 15 조)
    - 나. 항만시설사용료의 부과정수(항만법 제 15 조)
    - 다. 항만시설 사용료의 면제처분(항만법 제 15 조)
 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

관보 제 6144 호 별당 단가 7.0 전

라 시행

라. 항만공사하의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된 항만공사의 시행명령(항만법 제10조)

마. 비상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노무의 제공을 요청하고 토지, 가옥, 선박등을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제거수용하는 권한(항만법 제19조)

바. 법령위반등에 대한 허가승인의 취소, 허가승인의 효력정지, 물건의 변경, 이전의 명령,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을 위한 조치(항만법 제32조)

사. 공익을 위한 허가승인의 효력정지, 물건의 변경, 이전의 명령,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을 위한 조치(항만법 제33조)

②천항의 경우 서울특별시,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재위임한 사실을 교통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재위임은 관계시장 또는 도지사의 재위임결과 동시에 유효하며, 천항의 보고로서 규정 제 2조제 2항에 의한 소정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 시**

◎건설부고시제161호

공유수면 점용 및 공작물 설치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 허가하였으므로 고시한다.

1972년 5월 4일

상 공 부 장 관

연 허가년월일	장 점 용 장 소	수면 면 적	종류	목적
1972. 4. 29	전북 군산시 해망동 999의 6번지 지선	45.37평	어획물양육용	교설치

연 허가기간	장 허가자	허가를 받은 자	주소, 성명
1972. 4. 22~1973. 4. 21	전북 군산시	죽성동 26의 2번지	군산어업협동조합장 김병식

◎산림청고시제21호

산림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안림해제예정지틀 고시한다.

1972년 5월 3일

산 림 청 장

1. 보안림 해제 예정지

일 약 소 개 지	지 목 지	지 적	보 안 림 면 적	해 제 예 정 면 적	산 림 소 유 자		
도 군 면 리 산번	지 목 지 적	보 안 림 면 적	지 정 목 적	해 제 예 정 면 적	산 림 소 유 자		
경기 포천 포천 동교	43-1	임야	19.9100	19.9100	토사방비	19.9100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2가 1 재단법인 유지재단
	43-2	"	2.5900	2.5900			경성구천수교회 김수환
계	2권		22.5000	22.5000			

2. 해제이유: 신도요양원 설치  
산림법 제19조에 의함.

3. 해제신청자: 산림소유자 김수환

인쇄: 권진홍  
대한공문사 (75) 616124 (70) 4331

제 296 호

1972. 10. 16.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양택석

편집장 : 공보실장 김전호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 시보

창 레

◎ 조 례

제 735 호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 3

◎ 사 령 ..... 6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준서의 효력을 갖는다.

## 서울특별시

공 고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1972년 10월 16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 735 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의 2 및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2 조의 2 (근무기강의 확립)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 2 조의 3 (친절, 공정) 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 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 3 조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 3 항을 삭제한다.

제 3 조 (당직근무) ② 전항이외에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4 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4 조의 2 (파견근무) ① 지방공무원 임

용령 제 27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자는 복무에 관하여 그 근무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근무기관의 장은 당해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 6 조의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6 조 제 1 항중 "3월 1일"을 "4월 1일"로 "2월말"을 "3월말"로 "9시부터 17시"를 "9시 30분부터 17시 30분"으로 한다.

제 11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1 조 (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연도별 연가일수는 8일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월 이상 6월 미만인 자는 3일, 6월 이상 1년 미만인 자는 7일로 한다.

② 2년 이상 계속 근무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무년수 1년에 대하여 전항의 연가일수에 1일을 가산한다. 다만 연가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1 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11 조의 2 (근무기간의 계산) 전조의 근무기간에는 휴직기간,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2 조 (연가계획및 허가) ①시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 11 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상 제 11 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을 때에는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기본 봉급액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으로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제 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3 조 (연가일수에의산입) ①사사로 인한 결근일수와 휴직일수, 직위해제일수및 정적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 산입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참 또는 조퇴 3회는 결근 1일로 계산한다.

제 14 조 제 1 항중 "2월"을 "연누계 2월"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하며 제 2 항중 "10일"을 "5일"로 하고 제 3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고용원에 대하여 제 1 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무로 인한 병가인 경우에는 유급병가로 하며, 공무원의 사유로 인한 병가인 경우에는 무급병가로 하되 월 2일 (연누계 24일)은 유급병가로 한다.

제 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6 조 (특별휴가) ①임신중의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 마다 1일의 생리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 17조를 삭제한다.

제 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8 조 (휴가기간중의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4 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4 장 영리업무 및 겸직

제 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0 조 (영리업무의 금지) ①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장바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기타 임원이 되는 것.
- 3.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 21 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21 조 (결직허가) ① 공무원이 전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 1 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라 함은 시장을 말한다. 다만 구청의 4급이하의 구청장을 말한다.

제 5 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5 장 정치운동

제 22 조 (정치적 행위) ① 지방공무원법

제 57 조의 규정역 있어서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 1.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 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전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건당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1. 시위운동을 기획, 조직, 지원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 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 편집 배부하거나 이와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논설, 도서, 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 완장, 복식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 착용 현류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기타 명목 너하를 불순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제 23 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23 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72년 10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 11 조의 규정은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사 령

◎ 1972.10.16

성 북 구 지방행정주사  
하수과 근무를 명함.

박일문

용산구보건소 지방행정서기  
마포구 근무를 명함.

권오용

용 산 구 지방행정서기보  
용산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고재필

운수사업과 지방행정주사보  
행정주사보에 임함.

강탁준

12호봉을 급함.

양정 과 근무를 명함.

성 북 구 지방행정주사  
청소제 2 과 근무를 명함.

신규수

서 대 눈 구 지방행정주사보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이소형

주택단속과 지방토목기사보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이원민

구 획 정 리 제 1 과 지방토목기원보  
복직을 명함.

김영수

구획정리제 1 과 근무를 명함.

구 획 정 리 제 1 과 기한부공무원 김병기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수도국시설과장 지방토목기사 배희완  
직 무 대 리  
지방토목기정에 포함.

시설과장직 무대리를 명함.

3호봉을 급함.

특도수원지사무소소장직 무대리 지방토목기사 강영철  
지방토목기정에 포함.

특도수원지소장에 명함.

3호봉을 급함.

중 부 병 원 지방간호기사 이정숙  
지방간호기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중부병원간호과장에 포함.

남 부 병 원 지방간호기사 김정균  
지방간호기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남부병원간호과장에 포함.

◎ 1972.10.18.

경남무안군 지방행정주사 박경화  
서울특별시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11호봉을 급함.

동대눈구 근무를 명함.

서 울 특 별 시 장